2022년 민간기관 자살예방사업

수행기관 공고

2022. 4.

생명존중정책 민·관협의회
Governance For Suicide Prevention

고 문

1. 사 업 명 : 2022년 민간기관 자살예방사업

2. 사업목적

○ 생명 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사업 발굴 및 민간기관의 특성·역량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 확대

3. 사업기간

구 분	일 시	기 타 사 항
공고기간	2022. 4. 26.(화) ~ 5. 10.(화) 18:00	이메일 접수 후 우편원본제출
사업선정회의	2022. 5. 13.(금) 14:00 (예정)	PT 발표를 통한 서면심사
선정결과공고	2022. 5. 16.(월)	홈페이지공고
최종 실행계획서 제출	2022. 5. 19.(목) 까지	
사업OT	2022. 5. 20.(금) 14:00 (예정)	일정 변경 가능
사업비지원	최종 승인 후 10일이내	

4. 사업개요

○ 사업규모 : 총 4개이상 기관

○ 지원예산 : 250,000,000원

(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7,000만원이며, 이는 심사 및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)

○ 사업기간 : 2022년 5월 ~ 11월(약 6개월간)

○ 신청자격 : 수행기관과제를 기반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, 단체 등 민간단체 주도의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

5. 수행기관 과제 - 1개의 유형선택

유형	사업내용	세부사항
1	건전한 미디어 환경조성	자살보도, 영상콘텐츠, 언론인 세미나, 자살유해정보 관리 강화 등
2	대상별 자살예방사업 지원	청소년, 20-30 청년층, 노인,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·지원
3	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	온/오프라인 생명존중 캠페인 진행
4	자살 고위험군 대상지원	자살 유족,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회복 및 프로그램(심리지원 등) 운영
5	자살예방 인프라 강화	민간기관 지역네트워크(지부,지사 등)를 활용한 자살예방사업 등

<u>* 일반적인 교육사업이나 일회성 행사는 제외</u>

<u>* 한 기관에서 한 개의 유형만 선정하여 사업신청가능</u>

6. 선정방식 및 심사기준

○ 선정방식 : 1차 서류심사(적격여부) → 2차 대면심사 (6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)

○ 심사기준 : 사업 수행의 필요성, 적정성 및 추진의지, 기대효과

영역	배점	주요내용
사업 수행 필요성 (20점)	10	사업의 필요성
	10	민간기관 특성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
적정성 및 추진의지 (60점)	10	사업 목적의 충실성
	15	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
	10	성과목표의 적절성
	10	예산의 적절성
	5	투여인력의 적절성
	10	신청기관의 추진의지
기대효과 (20점)	10	사업추진을 통한 확산가능성 / 민간자원 및 인프라 활용정도
	10	활동전략의 우수성

○ 선정기준 :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* 심사점수중 최고·최저점 제외

○ 선정결과 통보 :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
7. 신청서의 제출

○ 제출서류 : (필수) 공모신청 제출공문 1부 및 지원신청서 7부
(선택) 기타 참고자료(기관소개 및 유사사업 진행자료)

○ 제출기한 : 2022. 5. 10.(화) 18:00까지 이메일제출

○ 제출방법 : 이메일 master@gfsp.or.kr접수 후, 익일 원본서류 우편도착

○ 제출장소 :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6층
한국생명의전화 법인사무국

○ 문　　의 :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 사무국
(02-764-8783, 02-2030-9176)

■ 사업비 지급 및 정산

- ○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,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
- ○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
- ○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

■ 기타

- ○ 접수된 서류는 위탁사업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
- ○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○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
  ※ 월별집행내역보고, 중간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등
- ○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
- ○ 보조사업자 신청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, 사용권 또는 특허권 침해 및 기재사항 누락과 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
- ○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를 따름